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해병대사령부 직제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신원식 (국방부 소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해병대사령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해병대사령부의 항공정책·항공작전 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반 참모부로 항공참모처를 신설하고, 인사참모처의 인사근무·행정에 관한 업무를 복지전직지원참모처로 이관하면서 부서의 임무와 기능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인사참모처 및 복지전직지원참모처를 각각 인사계획참모처 및 인사근무참모처로 변경하며, 교육훈련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사참모처의 전문교육 및 군 인적자원개발 업무와 전력기획실의 교리발전, 교범사업에 관한 업무를 교육훈련참모처로 이관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해병대사령부 직제 일부개정령안

해병대사령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인사참모처·복지전직지원참모처·정보참모처·작전참모처·작전계획참모처·교육훈련참모처·화력참모처·군수참모처·지휘통신참모처”를 “인사계획참모처·인사근무참모처·정보참모처·작전참모처·작전계획참모처·교육훈련참모처·화력참모처·항공참모처·군수참모처·지휘통신참모처”로 한다.

제11조의 제목 “(인사참모처)”를 “(인사계획참모처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인사참모처”를 “인사계획참모처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“인사·인력관리, 인사근무·행정”을 “인사·인력관리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인재육성 및 군 인적자원 개발 등”을 “인재육성”으로 한다. 제11조의2의 제목 “(복지전직지원참모처)”를 “(인사근무참모처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복지전직지원참모처”를 “인사근무참모처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인사근무·행정에 관한 사항

제14조의2제2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교리발전, 교범사업 등에 관한 사항

6. 전문교육 및 군 인적자원 개발 등에 관한 사항

제1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조의4(항공참모처) ① 항공참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,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.

②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

1. 항공정책의 수립 및 제도발전
2. 항공작전·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
3. 상륙헬기 체계개발 및 전력화 업무
4. 항공장비·정비에 관한 사항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참모부서) ① (생 략) ② <u>사령부에 일반참모부로 인사 참모처 · 복지전직지원참모처 · 정보참모처 · 작전참모처 · 작전 계획참모처 · 교육훈련참모처 · 화력참모처 · 군수참모처 · 지휘 통신참모처 및 공병참모처를 둔</u> 다. ③ (생 략)	제4조(참모부서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<u>인사 계획참모처 · 인사근무참모처 · 정보참모처 · 작전참모처 · 작전 계획참모처 · 교육훈련참모처 · 화력참모처 · 항공참모처 · 군수 참모처 · 지휘통신참모처</u> ---- --. ③ (현행과 같음)
제11조(인사참모처) ① <u>인사참모 처</u> 에 처장 1명을 두고,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. ②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(分掌)한다. 1. <u>인사 · 인력관리, 인사근무 · 행정 등 인사업무에 관한 사 항</u> 2. <u>인재육성 및 군 인적자원 개 발 등에 관한 사항</u>	제11조(인사계획참모처) ① <u>인사 계획참모처</u> ----- -----. ② ----- -----. 1. <u>인사 · 인력관리</u> ----- ----- -- 2. <u>인재육성</u> ----- -----
제11조의2(복지전직지원참모처) ① <u>복지전직지원참모처</u> 에 처장 1명을 두고, 처장은 영관급 장 교로 보한다. ②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	제11조의2(인사근무참모처) ① <u>인 사근무참모처</u> ----- ----- -----. ② -----

<u>분장한다.</u> 1. · 2. (생 략) <u><신 설></u> 제14조의2(교육훈련참모처) ① (생 략) <u>②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</u> <u>분장한다.</u> 1. ~ 3. (생 략) 4. 삭 제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	-----. 1. · 2. (현행과 같음) <u>3. 인사근무 · 행정에 관한 사항</u> 제14조의2(교육훈련참모처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<u>5. 교리발전, 교범사업 등에 관</u> <u>한 사항</u> <u>6. 전문교육 및 군 인적자원 개</u> <u>발 등에 관한 사항</u> 제14조의4(항공참모처) ① <u>항공참</u> <u>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, 처장</u> <u>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.</u> <u>②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</u> <u>분장한다.</u> <u>1. 항공정책의 수립 및 제도발</u> <u>전</u> <u>2. 항공작전 · 교육훈련 등에 관</u> <u>한 사항</u> <u>3. 상륙헬기 체계개발 및 전력</u> <u>화 업무</u> <u>4. 항공장비 · 정비에 관한 사항</u>
---	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방부 조직총괄담당관	
연 락 처	(02) 748 - 6559